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한병도·조 국·김병기

윤준병 • 위성락 • 위성곤

진선미 • 박정현 • 김한규

정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 있음.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(이하 "소방공무원복지법"이라 한다)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(소방청 차장),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. 또한,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,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.

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,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중 "10명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소속 공무원"을 "다음 각 호의 사람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위원회의"를 "위원회 소관"으로, "처리하기"를 "전문적으로 심의하기"로, "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방청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"를 "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
- 3. 소방청 또는 시·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
- ①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.

⑧ 위원의 임기,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	제9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
복지 정책심의위원회) ① (생	복지 정책심의위원회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	②
함하여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	<u>15명</u>
구성한다.	
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	③
고,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	<u>다음 각 호의</u>
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	사람
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	
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	
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	
<u>방청 소속 공무원</u> 중에서 소방	
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	
<u> <신 설></u>	1.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
	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
	풍부한 사람
<u><신 설></u>	2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
	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
<u><신 설></u>	3. 소방청 또는 시·도 소방본
	부 소속 공무원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위원회의</u> 사무를 <u>처리하기</u>	⑤ <u>위원회 소관</u> <u>전문</u>

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적으로 심의하기-----분과 두되,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.

⑥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⑥ (현행과 같음)
- ⑦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 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 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.
- ⑧ 위원의 임기, 위원회 및 분 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